

2005. 7. 29.(금)

제11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19.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5. 7. 21.

다. 상 정 일 자 : 2005. 7. 25.(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가. 제안사유

- 제천바이오밸리에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하여 산업고도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이전보전금(제3조), 관내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5조), 고용촉진보조금(제6조), 교육훈련보조금(제7조)
 - 수도권소재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제13조)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27조)
 - 포상금 지급(제4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 외국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03. 7. 7.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03. 11. 23.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나 시급성을 가지고 제정·개정하였으나 조례를 시행함에 조례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활용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할 것이며, 기업유지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최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아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조례안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도 지원근거는 폭넓다고 하겠으며 내용도 착실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상급부서(도 및 중앙)에서 우리 지역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 그 내용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며, 본칙은 내용에 따라 총칙규정, 실제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으로 나누어지며, 총칙 부분에는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혜택기준등을 규정하며 실제부분에서는 규정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조문내용을 전개하여 나가는 순서도 일반적사항으로 조문을 전개하여야 법령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데 적정할 것으로 보아 본조례의 구성을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 제3장 기업투자유치지원기금,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5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6장 보칙으로 하는 수정안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할 것이며

- 조례의 명칭에 대하여 통상적 지침이 있는 아니하나 조례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면서도 간략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는 그 주된 내용이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볼때 그 명칭에 기금운용의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우리시의 타 조례로 기금운용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대부분 그 제목에 기금운영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기업유치에 대한 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제천바이오밸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기업이 인근 자치단체로 뺏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최종섭 위원)
- 주소를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 기금은 별도의 목적이기에 그 자체가 제목에 등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학 위원)
- 제목이 주는 의미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가? (김진학 위원)

나. 답변요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 강원도는 도차원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규모로 50%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원주시와는 대결자체가 안됨. 삼화기업도 끝까지 분투했으나 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막판에 강원도 문막으로 갔음.
- 전문인력들이 제천으로 주소지를 두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록 인센티브가 되는 결로해서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킹해 나가겠습니다.

- 조례명칭은 투자유치 기금운용조례라는 것을 가미하더라도 조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운영하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 봅니다.
- 네, 단지 유치만 넣으면 느낌이 뭐 빠진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것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조례의 내용은 충실하고 바람직하나 조례의 구성순서를 좀 내실있게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명칭자체를 이해와 촉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 조례로 수정함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함.

7. 심사결과

- 김진학의원 수정안 발의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조문대비표 1부. 끝.